

라 항로계획의 변경

□ 현 황

- 항만설계기준 상 항로 변침각(선박 입출항시 선박이 항로를 따라 꺾여 들어가는 각도)을 77°에서 30°로 변경(항만설계기준)

※ 항로법선은 30°를 넘지 않아야 하고 항로 굴곡부 중심선의 곡률반경이 대상 선박길이의 4배 이상이어야 함

□ 문 제 점

- 변경된 항로(법선)가 해양보호구역과 서귀포도립해양공원을 침범하고 있어 공유수면 매립 승인 처분에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
- 해군에서는 ‘항로법선’은 설계자가 시뮬레이션을 위해 잠정 설정한 수준으로, 항만이 건설된 후 항만운용 주체가 항로를 추후 지정고시 하게 된다고 주장

※ 항로 변침각 변경에 따른 항계

